

『2019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』 지원 안내

1. 사업 개요

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,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

2. 지원 대상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
※ 중견기업: 중견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

※ 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, 청년창업기업 등은 1~5인 미만의 기업도 지원 가능

* 고용보험, 국가, 지자체 지원은 중복 제한되나, “청년 내일채움공제” 지원과 중복지원 가능

3. 지원 요건(*'18년도부터 가지원 사업장은 '18년도 기준에 따라 지원)

① '19.1.1이후 기업규모에 따라 청년(만 15~34세)을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

- 30인미만: 청년 1명이상, 30~99인: 2명이상, 100인이상: 3명이상

* 신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월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 한정함

② 기업전체 근로자수(피보험자수) 증가

- 2018년도 매월말일 기준 “연 평균 피보험자수”보다 청년채용후 기업전체 근로자수(피보험자수) 증가(월 증가 인원 범위 내 지원)

* 2018년 연 평균 피보험자 수 계산시 소숫점이하 버림

③ 월 임금이 1,745,150원(최저임금 수준) 이상

* 지원제외: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, 4대보험 미가입자,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,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자, 채용일 현재 고교·대학 재학 중인 자, 사업주의 배우자·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, 외국인, 채용일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4. 지원 금액(3개월 단위 신청·지원)

-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(최초 지원대상을 지원한 날로부터 3년간, 최대 90명 한도)

5. 문 의

- 김해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(T. 055-330-6437)
- 양산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(T. 055-379-2430)
- 밀양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(T. 055-350-2804)

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안내(전산)

○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 , 기업회원 접속)에서 신청

- 전월 입·퇴사자 4대보험 신고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

※ 문의: 한국고용정보원 전산팀(Tel. 043-870-8001, 안내멘트→2번→3번)

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시 첨부서류(업로드)

* 신규신청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청시

1. 근로계약서
2. 월별임금대장
3. 급여이체내역
4. 사업주확인서

* 계속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한 신청시

1. 근로계약서
2. 월별임금대장
3. 급여이체내역

- 전산 신청시 참고사항

* 장려금 지급기간 신청기간 : 1~36 차수, 채용일~말일(예, 2018.7.5.~7.31) 또는 해당월 1일~말일(예, 2018.8.1.~2018.8.31.)

* 지급구간 해당월 지급 임금(원) : 월임금 전체(세전금액) 1,600,000원

* 지급구간 해당월 임금지급 일수(일) : 채용일~말일(2018.7.5.~7.31 → 27일), 해당월 1일~ 말일(2018.8.1.~8.31.→ 31일)